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2000. 2. 1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1월 18일

○ 회부일자 : 2000년 1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0. 1. 31)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증평출장소장 김 종 록)

가.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문화체험, 교육기회 확대등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문화의 집 기능(안 제3조)

- 다양한 생활정보, 정보습득 및 교류기회, 문화예술공간,
휴게공간 제공

○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안 제4조)

- 문화의 집의 효율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 수탁자는 출장소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위탁 운영경비 지원(안 제5조)
 -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안 제6조, 제8조)
 - 문화의 집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
 - 규정위반, 운영능력 부족, 운영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계약해지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 김 종 만)

충청북도 증평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문화체험, 교육기회 확대등을 위하여 증평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의 집 설치 및 기능,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수탁자의 의무, 업무감독,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집의 설치등) ①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시민의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한다.
②문화의집은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715-1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문화의집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 CD, 비디오 등을 통한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2. 인터넷등 통신망을 통한 폭넓은 정보습득 및 교류기회 제공
3. 소규모 공연, 전시, 강좌 등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제공
4. 주민 친목도모를 위한 휴게공간 제공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수탁자 선정) ①출장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출장소장은 출장소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출장소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문화의집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된 운영비 및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문화의집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문화의집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출장소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감독) ①출장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기타 서류 등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해지)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자격기준·위탁기간등 위탁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기타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국유재산관리의 위탁) ①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해당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기간 기타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료의 면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2 생략

3. 행정재산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제27조 (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 (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 ①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이내로 한다.

제21조의3 (수탁재산의 관리) ①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조례 제62조(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